

공고 내용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문서번호 : 인개택총638-1호
공고일자 : 2019년 12월 18일
공고기한 : 2019년 12월 18일 ~ 2020년 1월 17일

게시판 : 각 충전소

공 고 문

2019년 12월 18일 제3차 임시대의원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- 아 래 -

❖ 제3차 임시대의원회 결과 보고.

● 제1호 의안, 정관 개정에 관한 건

-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승인 의결하다.

[제12조 5항, 제15조 1항, 5항, 제16조 6항, 7항, 제17조 1항, 2항,
제22조 2항, 3항, 제24조 3항, 4항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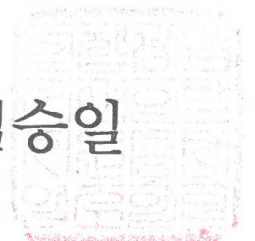
● 제2호 의안, 지부 운영 규정 개정의 건

-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승인 의결하다.

[제3조, 제6조, 제7조, 제9조]

※ 승인·의결된 정관 및 지부 운영 규정 : 별지 참조

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승일



정관 일부 개정 사항

개 정 전	개 정 후
제12조 (임원)	제12조 (임원) 5. <u>지부장</u>
제15조 (임기) 1.본 조합의 이사장, 이사 및 전무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5.모든 임원 및 대의원은 연임할 수 있다.	제15조 (임기) 1.본 조합의 이사장, 이사 및 전무이사, <u>지부장의</u>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5.모든 임원 및 대의원은 연임할 수 있다. <u>단,지부장은 단임제로 한다.</u>
제16조 (임원의 임무) 6.임원의 대리권 행사는 일체 불허한다.	제16조 (임원의 임무) 6. <u>지부장은 제5조에 의한 조합 사업중 조합에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한다.</u> 7.임원의 대리권 행사는 일체 불허한다.
제17조 (보 수) 1.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이사장 및 전무이사는 유급으로 한다. 2.이사장 및 전무이사 급여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.	제17조 (보 수) 1.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이사장 및 전무이사, <u>지부장은</u> 유급으로 한다. 2.이사장 및 전무이사, <u>지부장</u> 급여 등에 관하여는 <u>관련규정에 의한다.</u>
제22조 (지부장) 2. 지부장은 이사장이 대의원 당선자 중에 지명하여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며, 제5조에 규정된 사업과 조합의 업무지시를 추진한다. 단, 지부장 해임시는 대의원으로 복귀한다.	제22조 (지부장) 2. 지부장은 이사장이 <u>대의원 중에 추천하여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상근직으로 한다.</u> <u>단, 지부장은 대의원직을 겸직할 수 있으며, 지부장 해임시는 대의원으로 복귀한다.</u> 3. <u>제5조에 규정된 사업과 조합의 업무지시를 추진한다.</u>
제24조 (회의의 성립 및 의결) 3.조합 해산 및 이사장의 해임안은 의결권을 가진 재적 조합원 2/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하며, 임원의 불신임 권고안은 재적 대의원 2/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4.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해임안은 의결권을 가진 재적 대의원 2/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	제24조 (회의의 성립 및 의결) 3.조합 해산 및 이사장의 해임안은 의결권을 가진 재적 조합원 2/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하며, 임원의 불신임 권고안은 재적 대의원 2/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<u>단, 지부장은 대의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.</u> 4.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해임안은 의결권을 가진 재적 대의원 2/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<u>지부장은 대의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.단,이사 해임시 대의원으로 복귀한다.</u>

지부 운영 규정 일부 개정 사항

개 정 전	개 정 후
본 지부 운영규정은 공제조합 외주(마스타)출동서비스에 대한 조합원의 지속적 인원을 해결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,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여건이 성숙되어 정관에 정한 목적의 지부운영 필요시까지 지부의 업무는 공제조합 출동서비스에 한정하여 운영한다.	- 삭제
제3조 관할구역 지부의 관할구역은 강화지부, 제1지부는 부평구, 계양구 제2지부는 남구, 서구, 중구, 동구 제3지부는 남동구, 연수구 일원으로 한다.	제3조 관할구역 지부의 관할구역은 제1지부는 부평구, 계양구 <u>제2지부는 연수구, 미추홀구</u> 제3지부는 남동구, 제4지부는 서구, 중구, 동구 일원으로 한다.
제6조 기구 지부에는 지부장 1인으로 운영하며 기타 필요사항은 지부장이 공제조합과 협의하여 진행한다. 단, 별도의 임원 및 기구를 두지 않는다.	제6조 기구 지부에는 지부장 1인으로 운영하며 기타 필요사항은 지부장이 <u>조합</u> 과 협의하여 진행한다. 단, 별도의 임원 및 기구를 두지 않는다.
제7조 경비 및 보수 조합에서 구체적 업무 위임이 있을 시 예산편성하여 운영비를 지급 할 수 있다.	제7조 경비 및 보수 공제업무 외에 조합의 업무위임이 있을 시 <u>운영규정 및 지부 편성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.</u>
제9조 지부장 해임 조합 이사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 시 지부장을 즉시 해임할 수 있다 1. 부정행위 적발시 즉시 해임할 수 있다. 2. 조합원 민원 3회 접수시 즉시 해임할 수 있다. 3.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명백한 증거 발견시 즉시 해임할 수 있다. 4. 기타 부적절한 행우이 발견시 이사장 직권으로 즉시 해임할 수 있다.	제9조 지부장 해임 <u>조합 정관 제22조 및 제24조에 의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시 해임사유에 해당된다.</u> <u>1.부정행위 적발시</u> <u>2.공장알선 및 병원알선 3회 발생시</u> <u>3.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명백한 증거 발견시</u> <u>4.기타 부적절한 행위 발견시</u>